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

□ 대상펀드명 : 트러스톤제갈공명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효력발생일 : 2015. 7. 17.

□ 정정 사유 : 다른 자투자신탁 변경 사항 반영

□ 정정 내용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기준으로 기재	<u>2015.06.30</u>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 구조	<u>칭기스칸플러스알파[채권혼합]</u> <u>칭기스칸 퇴직연금[채권혼합]</u> <u>칭기스칸 퇴직연금[주식]</u> <u>밸류웨이 퇴직연금[채권혼합]</u> <u>아시아장기성장주연금저축[채권혼합]</u> <u>아시아장기성장장주퇴직연금[채권혼합]</u> <u>장기고배당퇴직연금[채권혼합]</u>	<u>장기성장30[채권혼합]</u> <u>장기성장40퇴직연금[채권혼합]</u> <u>장기성장퇴직연금[주식]</u> <u><삭 제></u> <u>아시아장기성장주40[채권혼합]</u> <u>아시아장기성장장주40퇴직연금[채권혼합]</u> <u>장기고배당40[채권혼합]</u>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2) 동일종목투자 트러스톤증권모투자신탁 [주식] 트러스톤증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나) (2)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제외)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3)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의 시가총	나) (2)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제외)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3)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의

	<p>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u>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u>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투자하는 경우</p>	<p>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u>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u>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투자하는 경우</p>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u>다른 자투자신탁</u> <u>변경 사항 반영</u>